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전점검의 종류 및 수준 구체화 등
지하안전관리체계 강화 》

■ 윤종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42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윤중군의원 대표발의(제221104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의 종류 및 수준 구체화 (안 제34조제1항)	3
나.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안 제34조제7항 신설)	8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장조사 후 안전조치명령 등 (안 제34조제8항·제9항 신설 등)	13

I. 윤종군의원 대표발의(제221104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종군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6. 24.

다. 회 부 일 : 2025. 6.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에 역부족한 상황임.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또한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공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 조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또한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4조제8항)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이행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9항).

또한 국토교통부의 공동 복구 등의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4조제1항제8호, 제56조제3항제7호).

3. 검토의견

가.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의 종류 및 수준 구체화 (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 ----- -----다 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
<u><신 설></u>	1. 정기안전점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발생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지표면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발생 징후를 확인하고, 보수·보강 등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의 지표면 외관조사 및 지표투과레이더 등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지하의 공동 유무 등을 조사하는 안전점검

개정안 제34조제1항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 점검의 종류와 점검 수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4조제1항1)은 지하시설물관리자²⁾에게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³⁾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3⁴⁾은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으로 지반침하 ‘육안조사’는 연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내용
3.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가.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공동(空洞)조사’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육안조사 및 공동조사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⁵⁾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개정안은 안전점검의 종류와 점검 수준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하고, ‘정기안전점검’은 지반침하 발생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지표면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정밀안전점검’은 지반침하 발생 징후를 확인

5)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85조(지하안전점검의 종류) 지하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관찰이나 조사장비를 이용한 자료의 획득과정과 이를 분석하여 점검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따라 진행하고, 목적 및 수준에 따라 육안조사와 공동(空洞)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86조(육안조사 수행방법) ① 육안조사는 지하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의 기초자료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안전점검 대상범위의 지표 및 주변에 대해 육안조사를 실시한다.
② 지하시설물 상부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단위구간별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침하유무 등을 관찰하고 침하, 공동(空洞)의 발생 현황과 그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기록한다.
③ 육안조사결과 광범위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침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해당 범위에 대해 공동(空洞)조사를 실시한다.

제87조(공동조사 수행방법) ① 지하안전점검 대상범위에 대하여 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수행하여 지반침하 예상구간 및 공동(空洞)의 정확한 위치, 크기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공동(空洞)조사의 실시구간이 차도인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도인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③ 공동(空洞)조사는 육안조사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공동(空洞)·침하위험지역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지표투과레이더탐사장비를 사용하여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④ 지표투과레이더탐사에 의해 공동(空洞)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지표면의 위치 및 주변지반을 정확히 관찰하여 기록한다.

⑤ 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수행하여 공동(空洞)이 발견된 경우 세계측지계의 위도·경도 등의 위치정보를 정확히 기록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하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하고, 보수·보강 등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의 지표면 외관조사 및 지표투과레이더 등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지하의 공동 유무 등을 조사하는 안전점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령 및 개정안의 안전점검 관련 규정 비교】

현 행 법	개 정 안
○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u>안전점검</u>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정기적으로 실시</u> ※시행규칙 별표 3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 지반침하 <u>육안조사</u>: 연 1회 이상 · <u>지표투과레이더 탐사</u>를 통한 <u>공동(空洞)조사</u>: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u>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u>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실시</u> - 정기안전점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u>지반침하 발생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지표면 외관조사</u>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u>지반침하 발생 징후를 확인하고, 보수·보강 등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의 지표면 외관조사 및 지표투과레이더 등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지하의 공동 유무 등을 조사</u>하는 안전점검

※자료: 현행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안 제34조제1항 조문 정리

이는 안전점검을 지반침하 발생 징후 확인을 위한 수준의 정기적인 점검과 지반침하 발생 징후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거나 지표투과레이더 등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밀한 수준의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안전점검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에 있어
서도, 개정안이 제시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각 안전점검의 실시 주기
등을 적절하게 상향 조정⁶⁾하도록 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다만 안전점검의 구분과
실시 시기 및 방법은 현행과 같이 ‘국토교통부령’ 등에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주기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하시설물도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안전점검 주기를 규정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김진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354호, 2025.5.2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 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나.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안 제3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u><신설></u>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u>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개정안 제34조제7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4조제2항7)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현행법 제34조제4항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⁹⁾의 실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는 지반침하의 우려 여부 및 안전조치 필요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주요 근거자료로서,

지하안전관리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현재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는 현행법 제47조¹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현행법 제47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고시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¹¹⁾은 국토교통부

1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JIS"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6조(지하안전정보의 제출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하안전 정보체계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출 요청이 없더라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도 통보받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¹²⁾ 또는 안전조치명령¹³⁾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16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하여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가급적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장조사 후 안전조치명령 등
(안 제34조제8항·제9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u><신설></u>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u>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 실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및 제거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u>
<u><신설></u>	<u>⑨ 제8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54조(벌칙) ① ----- ----- ----- --.
<u>8.·9.</u>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4조제8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생략)	<u>9.·10.</u>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제5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5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현행	개정안
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 17. (생략)	8. ~ 18. (현행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4조제6항¹⁴⁾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5월 법 개정(2025.5.27. 시행)을 통해 신설된 조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¹⁵⁾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7.>

15) 제34조제6항 신설 전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를 규정하고 있었음.

개정안 제38조제8항은 신설된 제34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및 제거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34조¹⁶⁾는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하거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실시(제34조제2항)’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제34조제4항)’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입법례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장 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후속 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및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4조제8항 신설),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안 제34조제9항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위험을 확인한 후에 해당 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아울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안 제54조제1항제8호 신설),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안 제56조제3항제7호

신설)하고 있음.

이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및 결과 통보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를 함께 규정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생각되며,

유사 입법례로 현행법 제22조의2¹⁷⁾ 및 제38조¹⁸⁾에 따른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과 관련하여 안전조치명령 미이행 또는 안전조치 이행 결과 미통보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처벌¹⁹⁾ 및 과태료²⁰⁾를 규정하고 있음.

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1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제34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법 제22조의2 및 제38조를 적용하여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2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